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3.11.15.(수) 조간	배포	2023.11.14.(화)

담당부서					
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	책임자	국 장	김철호	(02-3145-7750)
	담당자	팀 장	김경률	(02-3145-7752)
	담당자	팀 장	이두형	(02-3145-7970)
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총괄팀	책임자	실 장	김택주	(02-3145-7860)
	담당자	팀 장	유형주	(02-3145-7862)

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안 사전예고('23.11.15.~12.5.) -

<주요 내용>

◈ **(평가·보고 기준)** 기업의 **책임의식 제고** 및 **제도운영**의 **내실화**를 위해 **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**으로 운영하던 **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**을 **규정화**하고, **주요 용어, 서식** 등을 **정비**하였습니다.

○ **'24.1.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**부터 **적용**할 예정이며, 기준 이관에 따른 **혼란**을 줄이고자 **1년간**은 상장협의 **모범규준 적용**도 **가능**합니다.

◈ **(산업전문성 기준)** **상장회사**가 지정감사인의 **산업전문성**을 **희망**하는 경우 해당 **산업의 전문성**을 **갖춘 감사인력**을 **지정**하기 위해 관련 **요구절차*** 및 **산업전문성 분류기준**** 등을 **마련**했습니다.

* 산업전문성 산업(11개),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
**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·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

○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**수주산업, 금융업**(총 4개)은 **'24년부터 적용**하되, **다른 산업**(총 7개)은 **'25년부터 시행할 예정**입니다.

⇨ **(기대효과)** 내부회계관리제도 **평가·보고 기준을 규정화**함으로써 **제도운영의 내실을 다지고**,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**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**를 **기대**할 수 있습니다.

Ⅰ 개요

□ 금융감독원은 **외감제도 보완방안*** 및 **외부감사규정 개정****사항을 **반영**하여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(이하 '시행세칙')에 **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·보고 기준** 및 **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** 등을 **마련**하였습니다.

* '22.10.5. 「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」, '23.6.12. 「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」
**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1차 개정 : '23.5.2., 2차 개정 : '23.9.14.

Ⅱ 주요 개정내용

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기준 마련

◈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「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**」과 이를 **인용**하는 **조문**을 **신설**하였습니다.

□ **(기존 모범규준을 준거)** 기존 **한국상장회사협의회**가 제정·운영하던 「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**」을 **준거**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**평가·보고 절차***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.

*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프로세스는 (붙임1) 참조

□ **(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기준 주요 내용)** ① 회사의 **대표이사(내부회계관리자)**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**평가**하여야 합니다.

[참고]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

1 재무보고위험 식별	2 통제의 식별	3 통제의 설계·운영 효과성 평가	4 평가결과 문서화
▪ 재무보고의 양적, 질적요소 고려 ▪ 부정위험 고려	▪ 핵심통제 선정 ▪ 전사적 수준의 통제 효과성을 고려 ▪ 정보기술 일반통제	▪ 통제위험 평가 ▪ 평가 증거자료 결정 ▪ 평가대상 사업단위 선정 ▪ 설계 효과성 평가 ▪ 운영 효과성 평가	▪ 경영진의 평가근거 문서화 ▪ 결론도출근거 문서화

② 회사의 **대표이사**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**운영실태보고서**를 작성하여 **주주총회·이사회·감사(위원회)에 보고**하여야 합니다.

[참고]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절차

1 미비점에 대한 평가	2 미비점에 대한 조치	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	4 운영실태 보고
▪ 개별·결합하여 중요한 취약점인지 고려 ▪ 양적·질적요소 고려 ▪ 보완통제 영향 평가 ▪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평가	▪ 적시시정체계 마련 ▪ 개선방안을 감사(위원회) 보고 ▪ 감사(위원회) 권고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 ▪ 사후 이행여부 확인	▪ 발견된 취약점을 고려하여 효과성에 대한 결론 ▪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내용	▪ 주주총회·이사회·감사(위원회)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③ 회사의 **감사(위원회)**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**운영실태를 평가**하고 그 결과를 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**에 담아 **이사회에 보고**하여야 하며 **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**시켜야 합니다.

□ **(기타 개선 사항) 주요 용어***를 **새롭게 정의·정비**하여 평가·보고기준 **총칙에 반영**하고, **실무상 해석**에 **이견**이 많았던 **평가 대상 사업단위**를 명료하게 **규정****하였습니다.

* 핵심통제, 통제위험, 통제실패위험, 독립적인 평가, 상시적인 모니터링, 변화관리체계 등 20개를 총칙 문단2에 일괄 규정

** 평가대상 사업단위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, 제외 사업단위의 부문정보를 운영실태보고서에 공시함에 있어 영업이익 정보를 제외(평가·보고기준 문단 14)

※ 기존에 **문의가 많았던 내용(FAQ)**은 **가이드라인에 반영**하고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

□ **(운영실태·평가보고서 서식 정비) 운영실태보고서**에 **포함**되어야 할 **내용**을 **추가로 규정화***하고, **보고서 서식** 등을 개선하여 **가이드라인**에 구체적인 **양식으로 제시**하였습니다.

* 중요 취약점 관련 시정조치 계획에 감리 관련 시정조치 계획 포함(평가·보고기준 문단 25 사. 단서 신설)

□ **(시행시기)** 새로운 평가·보고기준은 **'24.1.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**할 **예정**입니다.

○ 다만, **이관**에 따른 **시장 혼란 방지**를 위해 **'24.1.1일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**에 **한해** 현행 준거기준인 **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**에 따른 평가 및 보고 **수행**이 **가능**합니다.

2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

◈ **상장회사**가 지정감사인의 **산업전문성**을 **희망**하는 경우 해당 **산업의 전문성**을 **갖춘 감사인력**을 **지정**하기 위해 **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**을 **마련**하였습니다.

□ **(산업 분류)**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**의견**을 **반영**하여 금융업, 수주산업 등 **11개의 산업**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)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였습니다.

구분	산업 분류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제10차 기준)
가.	**기초화학물질 제조업**	·소분류 201(기초화학물질제조업), 192(석유정제품제조업)
나.	**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**	·중분류 21(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)
다.	**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**	·대분류 D(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)
라.	**건설업 등 수주산업**	·대분류 F(건설업), ·소분류 311(선박 및 보트건조업), 312(철도장비제조업), 313(항공기,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)
마.	**운수 및 창고업**	·대분류 H(운수 및 창고업)
바.	**통신, 엔터테인먼트, 방송업**	·중분류 59(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), 60(방송업), 62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) ·소분류 612(전기통신업), 631(자료 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)
사	**소프트웨어개발업**	·소분류 582(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)
아.	**은행 및 저축 은행업**	·소분류 641(은행 및 저축기관)
자.	**보험업**	·소분류 651(보험업), 652(재보험업)
차.	**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**	·소분류 642(신탁업 및 집합투자업), 661(금융 지원 서비스업), 649(기타금융업)
카.	**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**	·대분류 M 중 중분류 71(전문서비스업) 제외 ·중분류 중 73(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)은 제외하나 소분류 739(그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)는 포함

※ 자세한 내용은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개정안 참조

□ **(시행시기)** 회계법인의 **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** 등을 **고려**하여 **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**으로 **시행**할 예정입니다.

○ **(24년 1월 1일부터 적용)** ❶건설업 등 수주산업, ❷은행 및 저축은행업, ❸보험업, ❹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

○ **(25년 1월 1일부터 적용)** ❶기초화학물질 제조업, ❷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❸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❹운수 및 창고업, ❺통신·엔터테인먼트·방송업·게임업, ❻소프트웨어 개발업, ❼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□ **(산업전문성 요구절차)**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**지정 감사인**의 **산업전문성**을 **요구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**지정기초자료 신고서**에 **산업전문성 필요 여부**를 **기재**토록 **규정**하였습니다.

[참고] 산업전문성 감사인 지정절차

1 지정기초자료 제출 (회사, 감사인→금감원)	2 산업전문성 분류	3 지정감사인 통지 (금감원→회사,감사인)	4 재지정 신청 (회사,감사인→금감원)
▪ **회사** : 산업전문성 필요여부* 기재 ▪ **감사인** : 산업전문가 보유여부 기재	▪ 감사인의 산업전문가 기준 충족 여부 판단	▪ 회사가 요구하는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	▪ **회사** : 감사인이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▪ **감사인** : 보유한 산업전문가 수에 비해 지정받은 회사 수가 많아 감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

* '불필요' 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,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

□ **(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)** **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**을 **포함**하도록 규정하고, **산업전문가***의 **분류기준**을 **마련**하였습니다.

*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·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,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

3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

□ **(재무기준*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)** **외감규정**(§12③)의 **개정**으로 **수치 산정 재무제표**가 **변경**(연결→별도)됨에 따라 **지정기초자료 신고서**를 **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**하도록 **개정**하였습니다.

* ❶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❷3년연속 부(-)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❸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

□ **(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변경)** 변경된 **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**의 **서식**에 **반영**하였습니다.

4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

□ **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**을 위해 **점검보고서**에 **대표이사 서명란** 등을 **추가**하고, **사후심리 점검방법**을 **보완**하였습니다.

Ⅲ 향후 계획

□ 외감규정 시행세칙 **개정안**은 **11.15.(수)부터 12.5.(화)까지 사전예고**를 **실시**하고, 이후 **연내 시행**을 목표로 추진될 **예정**입니다.

▪ **예고기간** : 2023.11.15일(수) ~ 2023.12.5일(화), (20일)

▪ **사전예고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
- 전자우편 : (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) ohk@fss.or.kr
  (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관련) doohyunnam@fss.or.kr
  (그 외 제도 관련) narae.kang@fss.or.kr
- 팩스 : 02-3145-7769

※ **개정안 전문(全文)**은 "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☞ 업무자료 ☞ 금융감독 법규정보 ☞ 세칙 제·개정 예고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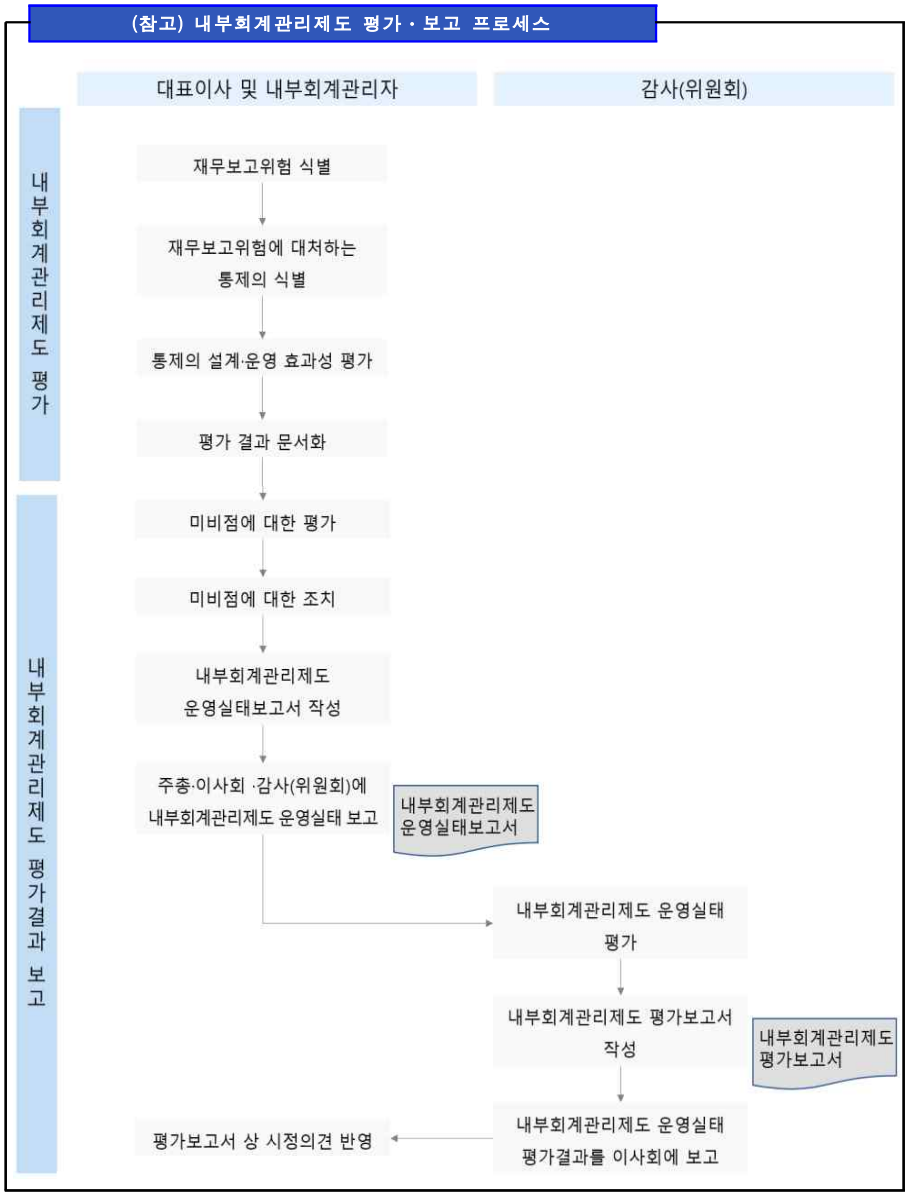
붙임 **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프로세스**